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사회지향 기계기술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제정일 2020. 12. 28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09. 30

개정 2023. 11. 01

개정 2025. 01.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사회지향 기계기술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는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 운영 체계

제3조(조직)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연구단에는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둔다.

③ 교육연구단에는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교육연구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연구단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최고 심의기구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한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③ 자체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을 초빙 시 그에 상응하는 평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참여교수 선발 및 변경) ①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아래 제7조(참여교수 실적평가)에 근거한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의 기여도 등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따라 선발된다.

② 사업년도별 참여교수 실적평가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은 교체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변경(제외) 시에는 교육연구단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⑤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사업 참여시 참여인력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교수 실적평가) ① 참여교수 실적평가(150점 기준)는 연구업적(75점), 교육연구단 기여도 및 교육연구단장 평가(75점)를 기준으로 매년 2월에 평가를 실시한다. 단,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8월 말 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업적(75점)은 연구논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창업, 정부 및 산업체 연구비 등에 대한 실적평가로 최고점 기준으로 상대적 점수로 환산한다. 각 항목별 실적점수 계산은 [별표 1]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 기여도 및 교육연구단장 평가는 참여교수의 연구,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총괄하여 평가한다.

제8조(참여교수의 성과급)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1인당 연 60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연 1회(매년 2월 중) 지급한다. 단,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8월 중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단 기여도의 종합적 평가결과(제7조)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이 확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에 따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실적우수 참여교수에게 A, B, C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④ 성과급 지급 평가를 위한 대상 실적은 참여기간 내 발생한 실적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⑤ 평가기간 내 연구실적이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 학과(부) 소속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정 명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 제13조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대 보험가입 확인서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 검증)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참여인력 서약서
- ⑤ 참여대학원생이 시간강의를 할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의시간은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로 제한한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평가)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 ②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매년 1학기, 2학기에 걸쳐 두 번 선정하며 교육연구단장이 교수별 연구실적과 교육연구단 기여도, 대학원생 재학 현황을 평가하여, 교수별로 지원대학원생 인원을 차등 배정하여 통보한다.
- ③ 지도교수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타 연구장학금 수혜여부, 학업성취도, 근면·성실성 등을 토대로 지원대학원생 대상자를 추천하면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승인한다. 지원대학원생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 ⑤ 4단계 BK21 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시 상한액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①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한다.

- ② 성과급 평가대상은 평가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 ③ 성과급은 학술연구실적의 종합적 평가결과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이 확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 ④ 성과급 평가 항목은 [별표 3]에 따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실적우수 참여대학원생에게 A, B, C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 ⑤ 성과급 지급 평가를 위한 대상 실적은 참여기간 내 발생한 실적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제12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기당 교내 6학점 이내, 교외 3학점 이내의 강의를 가능하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근무요건 및 임용원칙은 4단계 BK21 사업 훈령, 지침 및 대학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⑥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며,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수행 결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사업 참여시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 직원) ① 행정 직원은 교육연구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② 행정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 따라 필요 시 교육연구단장이 판단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①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의 경우는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이 동반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④ 국제학술대회 참가일로부터 1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서 1부
2.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 1부
3. 학회 증빙자료(발표논문 및 학술대회 팸플렛(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4. 항공권 인보이스 1부

⑤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서 1부
2. 항공 탑승권 원본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신분 및 출입국사실 확인 가능한 면)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⑥ 참가자는 [별표 3]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항공료, 학회등록비 및 체재비 등은 본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15조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 교육연구단에서 규정하는 단기 해외연수는 장기 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해외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5일 이내의 연구 및 교육 연수 활동, 장기 해외연수는 15일 초과 1년 이내의 연구 및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② 해외학자와 공동연구 및 해외 기관에서의 교육을 위해 교육연구단 소속의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 지원한다.

③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본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④ 해외연수생은 해외연수 계획서, 연수기관 승인 증빙서류(공식초청장 또는 MOU 체결 서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외연수생은 연수 완료 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① 해외석학 초빙은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공동연구, 국제교류 활동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해당 연구 분야의 저명도, 초빙의 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초청할 수 있다. 해외석학 초빙 시 활용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건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③ 해외학자 초빙 항공료 및 체재비는 본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외학자 초빙 강사료는 본교 국외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기타 규정

제17조(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운영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장이 승인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교육연구단의 수행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본 4단계 BK21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참여교수 연구업적 평가 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기준
1	논문	IF	구간별 배점(합계/평균)
		FWCI	구간별 배점(합계/평균)
		저널 %	구간별 배점(합계)
		국제공동연구 여부	건수
		커버/표지논문	건수
		특허/기술이전 여부	건수
		수상여부	건수
		언론홍보	건수
2	등록특허		건수(해외특허 가중치 / 공동특허는 각 1건)
3	기술이전		국내외 기술이전 금액
4	창업		창업자본금
5	연구비		정부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
합계			90점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사항
참여교수 실적 (80점)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점수
기여도 평가 (70점)	교육연구단 기여도(교육연구단 운영, 교육 및 산학협력 수행 등)
총점	150점

[별표 3]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순위	평가등급	평가기준
1위 ~ 10위	A	SCIE 논문, 국내저널, 국제/국내 학술대회 발표논문, 특허, 성적 등의 학술연구실적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시행
11위 ~ 25위	B	
26위 ~ 45위	C	

※ 순위로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 지급 (지급 인원 수 및 1인당 지급액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별표 4]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 및 발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참가학술대회명		
개최일자		
개최장소		
학회홈페이지 URL		
점검사항		체크
연구분야에 알맞은 학술대회 입니까?		O / X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O / X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O / X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O / X
기조연설자 및 편집위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O / X
연구 분야의 경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O / X

제출자: (서명)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Attend 캠페인(<https://thinkcheckattend.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